

더테라스 by 레드우즈파크 분양광고(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 더테라스 by 레드우즈파크 복합문화상업시설 (☎ 1551 - 8584) 등을 통해 분양광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 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분양광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건축물은 2021.01.01. 시행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오니, 본 분양광고를 숙지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건축물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내용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업건축물은 추후 양도 시 「혁신도시조성및발전예안특례법」 제5조의 4 제3항에 따른 기간 동안 위 법에 따라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 양도 가격 제한을 받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건축물의 경우 청약자 '만 나이' 요건 기준일은 최초 분양광고일(2024.09.04.) 기준입니다.
- 청약자격 : 본 사업건축물은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중복청약 유의사항 : 1인당 1실(건) 청약 가능하며, 동일인이 2실(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전부가 무효처리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호실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접수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잔여호실 분양 : 정당계약 이후 미계약 잔여호실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분양될 예정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함.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한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일정 및 장소

구 분	청약신청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 시	2024-09-09(월)	2024-09-12(목) 10:00 이후	2024-09-13(금) ~ 2024-09-15(일)(10:00~18:00)
방 법	분양홍보관 방문 청약 (10:00 ~ 18:00)	분양홍보관 공개추첨	분양홍보관 방문 계약
장 소	더테라스 by 레드우즈파크 홍보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서원대로 442)	더테라스 by 레드우즈파크 홍보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서원대로 442)	더테라스 by 레드우즈파크 홍보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서원대로 442)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원주시-2024-허가과-분양신고-1호, 분양신고필증 교부일자 : 2024년 9월 2일.
-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 8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임.
원주시청 신속허가과 [2020-신속허가과-신속허가-16](2020-4190304-1101-16) 2024. 05. 31. 건축허가 완료
- 분양사업자 : [시행사] 뿌리깊은나무들(주), [시공사] (주)태왕이앤씨, [분양대행사] (주)유준, [신탁사] 신한자산신탁(주)
- 공급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반곡동 2042번지
- 대지면적 : 10,751.32㎡
- 건축물연면적 : 전체 74,069.4682㎡
- 건축물 용도 : 소프트웨어사업자 입주시설(방송통신시설 / 일반업무시설 / 오피스텔), 편의시설(근린생활시설)
- 공급규모 : 지하3층 ~ 지상20층 중 근린생활시설(지하1층 ~ 지상1층) 총 56실, 오피스텔(지상3층 ~ 20층) 총 640호실, 업무시설 (지상1층 ~ 2층) 총 2개소,

방송통신시설(지상1층) 1개소 중 근린생활시설(지하1층 ~ 지상1층) 전체, 업무시설 (지상1층 ~ 2층) 전체

- 사업기간 : 2024년 12월 ~ 2028년 01월 (예정)
- 준공예정일 : 2028년 01월 (예정)
- 입주예정일 : 2028년 04월 (예정)
- 본 건축물의 대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강원원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산학연클러스터부지에 해당됨.
-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여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1항 2호에 따른 상대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음.
- 본 건물에는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으며, 건축물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 : 2022)에 따라 메르칼리 진도(MMI) 등급 VII이며, 최대유효지반가속도는 0.197(g)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구조설계(지정, 흙막이, 구조부재, 구조시스템 등)에 반영되어있는 건물임.

지진구역계수(S)	지반의 종류	중요도 계수(IE)	내진설계범주	건물중요도	반응수정계수(R)
0.176	S2	1.2	C	1	4.0

- 본 건축물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부지에 건립하는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인바, 수분양자와 입주자는 혁신도시조성및발전에관한특별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수분양자는 본 사업부지가 포함된 원주혁신도시의 각종 인·허가 내용(개발 및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등 제 영향평가), 관계 법령(원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포함), 관계 기관 협의 내용 및 각종 인허가 변경과정에서 관계기관의 협의 내용에 따라 불가피하게 계획변경이 발생할 경우 이를 수인하여야 합니다.
- 본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에 대하여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분양광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급대상 및 공급규모

① 근린생활시설

[면적 : m²]

층	호실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주차장면적	계약면적	대지지분
		전용면적	공용면적	소계				
지하1층	B101	42.1200	10.0426	52.1626	1.3712	19.5123	73.0461	10.6028
	B102	41.4000	9.8709	51.2709	1.3478	19.1787	71.7974	10.4215
	B103	46.9200	11.1871	58.1071	1.5275	21.7359	81.3705	11.8111
	B104	38.5900	9.2010	47.7910	1.2563	17.8770	66.9243	9.7142
	B105	52.4600	12.5080	64.9680	1.7079	24.3023	90.9782	13.2056
	B106	44.5000	10.6101	55.1101	1.4487	20.6148	77.1736	11.2019
	B107	40.4887	9.6537	50.1424	1.3181	18.7566	70.2171	10.1921
	B108	40.7400	9.7136	50.4536	1.3262	18.8730	70.6528	10.2554
	B109	40.7400	9.7136	50.4536	1.3262	18.8730	70.6528	10.2554
	B110	40.7400	9.7136	50.4536	1.3262	18.8730	70.6528	10.2554
	B111	103.3126	24.6327	127.9453	3.3634	47.8600	179.1687	26.0067
	B112	51.0400	12.1694	63.2094	1.6616	23.6445	88.5155	12.8482

	B113	68.6400	16.3657	85.0057	2.2346	31.7978	119.0381	17.2786
	B114	66.3600	15.8221	82.1821	2.1604	30.7416	115.0841	16.7047
	B115	66.3600	15.8221	82.1821	2.1604	30.7416	115.0841	16.7047
	B116	66.3600	15.8221	82.1821	2.1604	30.7416	115.0841	16.7047
	B117	66.3600	15.8221	82.1821	2.1604	30.7416	115.0841	16.7047
	B118	66.3600	15.8221	82.1821	2.1604	30.7416	115.0841	16.7047
	B119	106.3410	25.3547	131.6957	3.4620	49.2629	184.4206	26.7690
	B120	67.1704	16.0153	83.1857	2.1868	31.1170	116.4895	16.9087
	B121	40.9500	9.7636	50.7136	1.3331	18.9703	71.0170	10.3083
	B122	38.2200	9.1127	47.3327	1.2443	17.7055	66.2825	9.6209
	B123	38.2200	9.1127	47.3327	1.2443	17.7055	66.2825	9.6209
	B124	39.1300	9.3297	48.4597	1.2739	18.1271	67.8607	9.8501
지상1층	101	35.4200	8.4451	43.8651	1.1531	16.4084	61.4266	8.9161
	102	32.3400	7.7108	40.0508	1.0528	14.9816	56.0852	8.1409
	103	44.6600	10.6482	55.3082	1.4539	20.6888	77.4509	11.2422
	104	32.3400	7.7108	40.0508	1.0528	14.9816	56.0852	8.1409
	105	36.1900	8.6287	44.8187	1.1783	16.7652	62.7622	9.1100
	106	36.1900	8.6287	44.8187	1.1783	16.7652	62.7622	9.1100
	107	32.3400	7.7108	40.0508	1.0528	14.9816	56.0853	8.1409
	108	32.3400	7.7108	40.0508	1.0528	14.9816	56.0853	8.1409
	109	32.3400	7.7108	40.0508	1.0528	14.9816	56.0853	8.1409
	110	32.3400	7.7108	40.0508	1.0528	14.9816	56.0853	8.1409
	111	32.3400	7.7108	40.0508	1.0528	14.9816	56.0853	8.1409
	112	32.3400	7.7108	40.0508	1.0528	14.9816	56.0853	8.1409
	113	36.1900	8.6287	44.8187	1.1783	16.7652	62.7622	9.1100
	114	30.8100	7.3460	38.1560	1.0031	14.2729	53.4320	7.7557
	115	37.1300	8.8528	45.9828	1.2089	17.2006	64.3923	9.3467
	116	37.0125	8.8248	45.8373	1.2050	17.1462	64.1885	9.3171
	117	30.6925	7.3180	38.0105	0.9992	14.2184	53.2281	7.7262
	118	56.3100	13.4259	69.7359	1.8332	26.0859	97.6550	14.1748
	119	66.0000	15.7363	81.7363	2.1486	30.5748	114.4597	16.6140
	120	89.3000	21.2917	110.5917	2.9072	41.3686	154.8675	22.4793
	121	67.2000	16.0224	83.2224	2.1877	31.1307	116.5408	16.9161
	122	67.2000	16.0224	83.2224	2.1877	31.1307	116.5408	16.9161
	123	67.2000	16.0224	83.2224	2.1877	31.1307	116.5408	16.9161

	124	67.2000	16.0224	83.2224	2.1877	31.1307	116.5408	16.9161
	125	67.2000	16.0224	83.2224	2.1877	31.1307	116.5408	16.9161
	126	67.2000	16.0224	83.2224	2.1877	31.1307	116.5408	16.9161
	127	67.2000	16.0224	83.2224	2.1877	31.1307	116.5408	16.9161
	128	67.2000	16.0224	83.2224	2.1877	31.1307	116.5408	16.9161
	129	94.4000	22.5076	116.9076	3.0732	43.7312	163.7120	23.7631
	130	90.1000	21.4824	111.5824	2.9332	41.7392	156.2548	22.6807
	131	71.4000	17.0238	88.4238	2.3244	33.0764	123.8246	17.9734
	132	67.3725	16.0634	83.4359	2.1933	31.2106	116.8398	16.9595

② 업무시설

[면적 : m²]

층	호실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주차장면적	계약면적	대지지분
		전용면적	공용면적	소계				
지상1층	H/101	272.9000	99.2838	372.1838	9.7838	139.2214	521.1890	75.6515
지상2층	H/201	2343.8825	852.7279	3196.6104	84.0312	1195.7445	4476.3861	649.7557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① 근린생활시설

[단위 : 원 (부가세포함)]

호실	층별	공 급 금 액				계약금 (10%)	중도금 (40%)				잔금 (5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계약시	1차 (10%)	2차 (10%)	3차 (10%)	
						2026년 2월	2026년 6월	2026년 10월	2027년 3월	입주 시	
B101	B1층	6,345,000	717,480,000	71,748,000	795,573,000	79,557,300	79,557,300	79,557,300	79,557,300	79,557,300	397,786,500
B102		6,237,000	751,788,000	75,178,800	833,203,800	83,320,380	83,320,380	83,320,380	83,320,380	83,320,380	416,601,900
B103		7,069,000	852,032,000	85,203,200	944,304,200	94,430,420	94,430,420	94,430,420	94,430,420	94,430,420	472,152,100
B104		5,814,000	657,353,000	65,735,300	728,902,300	72,890,230	72,890,230	72,890,230	72,890,230	72,890,230	364,451,150
B105		7,903,000	893,621,000	89,362,100	990,886,100	99,088,610	99,088,610	99,088,610	99,088,610	99,088,610	495,443,050
B106		6,704,000	808,168,000	80,816,800	895,688,800	89,568,880	89,568,880	89,568,880	89,568,880	89,568,880	447,844,400
B107		6,100,000	735,325,000	73,532,500	814,957,500	81,495,750	81,495,750	81,495,750	81,495,750	81,495,750	407,478,750
B108		6,137,000	694,020,000	69,402,000	769,559,000	76,955,900	76,955,900	76,955,900	76,955,900	76,955,900	384,779,500
B109		6,137,000	694,020,000	69,402,000	769,559,000	76,955,900	76,955,900	76,955,900	76,955,900	76,955,900	384,779,500
B110		6,137,000	694,020,000	69,402,000	769,559,000	76,955,900	76,955,900	76,955,900	76,955,900	76,955,900	384,779,500
B111		15,565,000	1,593,829,000	159,382,900	1,768,776,900	176,877,690	176,877,690	176,877,690	176,877,690	176,877,690	884,388,450
B112		7,689,000	762,807,000	76,280,700	846,776,700	84,677,670	84,677,670	84,677,670	84,677,670	84,677,670	423,388,350

B113	1층	10,341,000	1,169,317,000	116,931,700	1,296,589,700	129,658,970	129,658,970	129,658,970	129,658,970	129,658,970	648,294,850
B114		9,997,000	1,130,482,000	113,048,200	1,253,527,200	125,352,720	125,352,720	125,352,720	125,352,720	125,352,720	626,763,600
B115		9,997,000	1,130,482,000	113,048,200	1,253,527,200	125,352,720	125,352,720	125,352,720	125,352,720	125,352,720	626,763,600
B116		9,997,000	1,130,482,000	113,048,200	1,253,527,200	125,352,720	125,352,720	125,352,720	125,352,720	125,352,720	626,763,600
B117		9,997,000	1,130,482,000	113,048,200	1,253,527,200	125,352,720	125,352,720	125,352,720	125,352,720	125,352,720	626,763,600
B118		9,997,000	1,130,482,000	113,048,200	1,253,527,200	125,352,720	125,352,720	125,352,720	125,352,720	125,352,720	626,763,600
B119		16,021,000	1,811,490,000	181,149,000	2,008,660,000	200,866,000	200,866,000	200,866,000	200,866,000	200,866,000	1,004,330,000
B120		10,119,000	755,575,000	75,557,500	841,251,500	84,125,150	84,125,150	84,125,150	84,125,150	84,125,150	420,625,750
B121		6,169,000	539,641,000	53,964,100	599,774,100	59,977,410	59,977,410	59,977,410	59,977,410	59,977,410	299,887,050
B122		5,758,000	503,665,000	50,366,500	559,789,500	55,978,950	55,978,950	55,978,950	55,978,950	55,978,950	279,894,750
B123		5,758,000	503,665,000	50,366,500	559,789,500	55,978,950	55,978,950	55,978,950	55,978,950	55,978,950	279,894,750
B124		5,895,000	515,591,000	51,559,100	573,045,100	57,304,510	57,304,510	57,304,510	57,304,510	57,304,510	286,522,550
101		5,336,000	615,659,000	61,565,900	682,560,900	68,256,090	68,256,090	68,256,090	68,256,090	68,256,090	341,280,450
102		4,872,000	562,137,000	56,213,700	623,222,700	62,322,270	62,322,270	62,322,270	62,322,270	62,322,270	311,611,350
103		6,728,000	776,326,000	77,632,600	860,686,600	86,068,660	86,068,660	86,068,660	86,068,660	86,068,660	430,343,300
104		4,872,000	562,137,000	56,213,700	623,222,700	62,322,270	62,322,270	62,322,270	62,322,270	62,322,270	311,611,350
105		5,452,000	657,259,000	65,725,900	728,436,900	72,843,690	72,843,690	72,843,690	72,843,690	72,843,690	364,218,450
106		5,452,000	657,259,000	65,725,900	728,436,900	72,843,690	72,843,690	72,843,690	72,843,690	72,843,690	364,218,450
107		4,872,000	509,101,000	50,910,100	564,883,100	56,488,310	56,488,310	56,488,310	56,488,310	56,488,310	282,441,550
108		4,872,000	509,101,000	50,910,100	564,883,100	56,488,310	56,488,310	56,488,310	56,488,310	56,488,310	282,441,550
109		4,872,000	509,101,000	50,910,100	564,883,100	56,488,310	56,488,310	56,488,310	56,488,310	56,488,310	282,441,550
110		4,872,000	509,101,000	50,910,100	564,883,100	56,488,310	56,488,310	56,488,310	56,488,310	56,488,310	282,441,550
111		4,872,000	509,101,000	50,910,100	564,883,100	56,488,310	56,488,310	56,488,310	56,488,310	56,488,310	282,441,550
112		4,872,000	509,101,000	50,910,100	564,883,100	56,488,310	56,488,310	56,488,310	56,488,310	56,488,310	282,441,550
113		5,452,000	569,719,000	56,971,900	632,142,900	63,214,290	63,214,290	63,214,290	63,214,290	63,214,290	316,071,450
114	4,641,000	469,868,000	46,986,800	521,495,800	52,149,580	52,149,580	52,149,580	52,149,580	52,149,580	260,747,900	
115	5,594,000	584,504,000	58,450,400	648,548,400	64,854,840	64,854,840	64,854,840	64,854,840	64,854,840	324,274,200	
116	5,576,000	582,631,000	58,263,100	646,470,100	64,647,010	64,647,010	64,647,010	64,647,010	64,647,010	323,235,050	
117	4,624,000	468,094,000	46,809,400	519,527,400	51,952,740	51,952,740	51,952,740	51,952,740	51,952,740	259,763,700	
118	8,483,000	858,714,000	85,871,400	953,068,400	95,306,840	95,306,840	95,306,840	95,306,840	95,306,840	476,534,200	
119	9,943,000	1,006,565,000	100,656,500	1,117,164,500	111,716,450	111,716,450	111,716,450	111,716,450	111,716,450	558,582,250	
120	13,454,000	1,361,898,000	136,189,800	1,511,541,800	151,154,180	151,154,180	151,154,180	151,154,180	151,154,180	755,770,900	
121	10,124,000	1,168,137,000	116,813,700	1,295,074,700	129,507,470	129,507,470	129,507,470	129,507,470	129,507,470	647,537,350	
122	10,124,000	1,168,137,000	116,813,700	1,295,074,700	129,507,470	129,507,470	129,507,470	129,507,470	129,507,470	647,537,350	
123	10,124,000	1,168,137,000	116,813,700	1,295,074,700	129,507,470	129,507,470	129,507,470	129,507,470	129,507,470	647,537,350	
124	10,124,000	1,168,137,000	116,813,700	1,295,074,700	129,507,470	129,507,470	129,507,470	129,507,470	129,507,470	647,537,350	
125	10,124,000	1,168,137,000	116,813,700	1,295,074,700	129,507,470	129,507,470	129,507,470	129,507,470	129,507,470	647,537,350	

126	10,124,000	1,168,137,000	116,813,700	1,295,074,700	129,507,470	129,507,470	129,507,470	129,507,470	129,507,470	129,507,470	647,537,350
127	10,124,000	1,168,137,000	116,813,700	1,295,074,700	129,507,470	129,507,470	129,507,470	129,507,470	129,507,470	129,507,470	647,537,350
128	10,124,000	1,168,137,000	116,813,700	1,295,074,700	129,507,470	129,507,470	129,507,470	129,507,470	129,507,470	129,507,470	647,537,350
129	14,222,000	1,640,971,000	164,097,100	1,819,290,100	181,929,010	181,929,010	181,929,010	181,929,010	181,929,010	181,929,010	909,645,050
130	13,574,000	1,374,121,000	137,412,100	1,525,107,100	152,510,710	152,510,710	152,510,710	152,510,710	152,510,710	152,510,710	762,553,550
131	10,757,000	1,088,868,000	108,886,800	1,208,511,800	120,851,180	120,851,180	120,851,180	120,851,180	120,851,180	120,851,180	604,255,900
132	10,150,000	1,027,462,000	102,746,200	1,140,358,200	114,035,820	114,035,820	114,035,820	114,035,820	114,035,820	114,035,820	570,179,100

② 업무시설

[단위 : 원 (부가세포함)]

호실	층	공 급 금 액				계약금(10%)	중도금(40%)				잔금(5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계약 시	1차(10%)	2차(10%)	3차(10%)	4차(10%)	입주 시
H / 101	지상1층	45,277,000	3,895,142,000	389,514,200	4,329,933,200	432,993,320	432,993,320	432,993,320	432,993,320	432,993,320	2,164,966,600
H / 201	지상2층	388,884,000	16,430,730,000	1,643,073,000	18,462,687,000	1,846,268,700	1,846,268,700	1,846,268,700	1,846,268,700	1,846,268,700	9,231,343,500

■ 공통사항

- 상기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의 분양 금액은 호실별 면적, 층, 향, 위치 등에 따라 분양 금액이 다르게 책정되었으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의 공급 내역, 공급 금액, 납부 일정은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기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분양홍보관을 직접 방문하여 각 호실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의 분양 금액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비용,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의 전용면적은 벽체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상기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의 호실당 계약 면적과 분양 금액에는 주차장, 건축 설비실 (전기실, 기계실 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의 벽체 공용면적은 호실별 바닥 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입니다.
- 상기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의 대지 지분은 호실별 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하였습니다.
- 상기 공부상 대지 면적과 대지 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등에 따라 계약 면적과 등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분양 금액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1항 내지 제2항 규정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거 계약 체결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은 상기 지정된 시점에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사용 승인 이후 입주지정기간 내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잔금 중 50%는 입주 지정 기간에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사용 승인일 이후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 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 (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분양 금액의 납부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분양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 금액의 납부 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 및 본 사업지 주변 여건에 따라 항공기, 도로 교통, 지하철 및 기타 건축물의 공사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추후 계약의 해제 및 손해 배상 청구 대상이 되지 않으니,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물은 도로에 인접하여 차량 운행에 따른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분양사업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물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는 사용승인 후 도로법에 의거 점용료가 부가될 수 있으며, 상가, 오피스텔,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소유권자 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부지 인근의 개발사항들은 향후 정부의 정책/ 해당 사업자의 사정으로 변경 및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민원제기 및 계약해제,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어 청약신청 및 계약 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통합 제정 시행으로 최초 분양 계약 등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으로 확대되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기타 계약 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 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법정 표시단위인 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기 바랍니다.(평형 환산방법 : 면적(m²) x 0.3025 또는 면적(m²) ÷ 3.3058)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 전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본 공급계약 체결과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또는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 수입인지 구입 가능)
 - 세액(기재금액 기준)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II 청약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청약 신청 자격 및 유의사항

-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최초 분양광고일(2024.09.04.)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 단,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과 법인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은 1인 1실(건)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동일인이 2실(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청약신청은 분양홍보관에서 현장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청약이 불가합니다.
- 무작위 공개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분양사업자는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고 미계약 물량 발생 시에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당사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예정입니다.
- 본 사업건축물은 산학연클러스터 부지에 건립하는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서, 청약 신청 자격 여부와 무관하게 수분양자나 입주자는 실 입주를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입주승인을 잔금 납부일 이전에 받아야 하며, 따라서 계약 체결 이후 입주승인 신청 이전까지 혁신도시조성및발전예관특별법,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시설 및 그 지원시설' 등 입주가 허용되는 분야의 사업자등록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별첨: 입주가능업종 목록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유치업종과 제외 업종)
- 본 사업건축물은 추후 양도 시 「혁신도시조성및발전예관특별법」에 따라 양도인은 양도신고를 하여야 하고, 양수인(임차인 등 실입주자 포함)은 입주승인을 받아야 하며, 양도인은 동법 제5조의 4 제3항에 따른 기간 동안 양도 시 가격 산정 등 규율에 따라야 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일정 및 장소

- 청약일정 및 계약일정

구분	청약일	당첨자 발표일	계약일	당첨자선정 및 동호수 결정방법
일시	2024. 09. 09.(월) 10:00 ~ 18:00	2024. 09. 12.(목) 10:00 이후	2024. 09. 13.(금) ~2024. 09. 15.(일) 10:00 ~ 18:00	공개추첨에 의해 신청 유형(호실)별 무작위 결정
장소	더테라스 by 레드우즈파크 홍보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서원대로 442)	더테라스 by 레드우즈파크 홍보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서원대로 442)	더테라스 by 레드우즈파크 홍보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서원대로 442)	

• 청약신청금 및 수납방법

구 분	청약 신청금	신청금 납부방법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1,000,000원	신한은행	100 - 037 - 360537	신한자산신탁㈜ 이승수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청약신청금은 인정하지 않음(무통장입금 시 총·호실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고, 무통장 입금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금 납부 시 입금증 작성 방법은 청약 총호실, 입금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신청금은 계약금으로 대체됩니다.

· 청약신청자가 많아서 접수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추첨 및 당첨자 발표시간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청약은 반드시 분양홍보관에서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 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당사 분양사업자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격 및 신청건수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않으며,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분양사업자는 계약체결 시 동일인의 중복 당첨을 모두 무효처리 하오니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중복 당첨으로 인한 당첨 탈락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제출서류는 최초 분양광고일(2024.09.04.)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입력)사항으로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분양사업자에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청구하여 신청자격 유무를 대조, 확인 후 일치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금 환불은 청약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합니다.(단, 청약 시 제출하신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 시 구비서류

구 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서(분양홍보관에 비치) · 청약신청금 ·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청약신청자 명의)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사본1통(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통) 재외동포 중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1통(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1통),
	제3자 대리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사실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청약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p style="text-align: center;">법인 신청 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서(분양홍보관에 비치) • 법인 인감 도장 및 법인 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통 제출)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 대표이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표이사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 청약접수는 상기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며, 청약신청이 완료된 이후에는 구비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약신청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시 홍보관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아니하고 신청자가 기재(입력)한 내용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신청정보를 착오로 기재하여 당첨된 경우,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에게 있으며, 분양사업자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추천 방법 및 안내사항

- 추천 : 신청 호실은 공개추첨을 통해 무작위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당첨자 확인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호실 발생 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라 분양사업자가 수의계약으로 분양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안내사항

-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며, 낙첨자의 청약신청금은 청약 시 접수한 환불계좌로 환불일 이후 자동이체 합니다.(이자는 미지급됩니다.) 청약금 환불은 청약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합니다. (단, 청약 시 제출하신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신청자의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및 계약은 취소하고 고발조치 될 수 있으며, 계약금은 분양사업자에게 귀속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분양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는 계약 체결 시 홍보관,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인지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인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귀책은 계약자에게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 청약신청금 환불 방법

구 분	환불방법
환불 대상	•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며, 낙첨자의 청약신청금은 청약 시 접수한 환불계좌로 환불일 이후 자동이체 합니다.
환불 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이후 금융기관 기준 7영업일 이내

- 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가 동일해야 환불이 가능하며, 계좌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 제출로 인하여 환불이 안 될 경우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 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III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 기간 및 장소

계약체결 기간	계약체결 시간	장 소	계약금 납부
2024년 09월 13일 ~ 09월 15일	10:00 ~ 18:00	더테라스 by 레드우즈파크 홍보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서원대로 442)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 입금

- 아래의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입금(호실 및 계약자 성명 기재)하여야 하며, 아래 분양대금 납부계좌 외 계좌입금 또는 현장에서 직원 등에게 현금 납부하는 경우에는 분양대금 납입으로 인정 되지 않습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서를 미작성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회사에서 임의 분양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금 및 분양(공급) 대금 납부계좌

- ※ 분양자들께서는 분양대금(중도금 및 잔금 포함)을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분양대금관리자로 명시된 납부계좌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 후 분양대금관리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계좌 이외의 계좌로 납부 시 분양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납부한 분양대금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구 분	금융기관명	분양대금 납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근린생활시설	신한은행	100 - 037 - 363992	신한자산신탁㈜	입금 시 호실과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 “근린생활시설 B101호” 당첨자 홍길동“ →

				지하101홍길동)
업무시설	신한은행	100 - 037 - 363907	신한자산신탁㈜	입금 시 호실과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 “업무시설 201호” 당첨자 홍길동“ → 201홍길동)

- 분양대금 관리 : 신한자산신탁㈜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의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된 호실을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좌오류, 착오납입 등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분양사업자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사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받으며 계약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분양홍보관에서 현장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사업자는 상기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에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자에게 전자등기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통지하기로 하며, 이 경우 잔여 분양대금은 변경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만일 계약자의 계약서상의 주소지가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 후 10일 이내에 분양사업자에게 서면(주민등록등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분양사업자는 각 분양대금의 납부기일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공급계약서에 따른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계약 시 구비사항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 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양계약 신청서 (분양홍보관 비치) • 청약신청 접수(영수)증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통 • 재외동포의 경우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 주민등록표등본 1통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1통(용도 : 업무시설 계약용, 근린생활시설 계약용) • 외국인의 경우 : 본국 대사/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서명증명서 • 인감도장(본인서명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가능) • 외국인으로 계약체결을 위한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출입국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법 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양계약 신청서 (분양홍보관 비치) • 청약신청 접수(영수)증 • 법인 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통) • 법인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업무시설 계약용 , 근린생활시설 계약용) • 법인 등기부등본 1통 •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 대표이사 본인 계약시 주민등록증(직원 및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p>※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본인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 추가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업무시설 계약위임용, 근린생활시설 계약위임용)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건본홍보관에 비치)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및 인장(또는 대리인 서명)

- 상기 제 증명서류는 분양광고일(2024.09.04.)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는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외국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은 청약 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회사에서 임의 분양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됩니다.
- 청약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단지 내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배치, 구조 및 층·호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건본홍보관, 평면도, 배치도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부득이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공급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최초 계약일 이후 미분양 호실에 대한 호실 및 면적, 분양금액은 관계법령에 의거하며 당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IV 기타 계약자안내

■ 준공 및 입주안내

- 본 목적물은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서 관할 관청의 입주승인을 받아야 실입주할 수 있습니다.
 - ※ 입주 가능일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입주승인 허가증을 교부받은 날이며, 이를 분양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수분양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입주대상 업종 및 자격을 위한 심사자료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협조하여야 하며, 입주 부적격업체로 판정되어 입주가 불가할 경우 분양사업자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준공 예정일 2028년 01월 예정
- 입주 예정일 2028년 04월 예정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

- 입주 지정 개시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지정 개시 일자는 추후 별도 통보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 지정 개시 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분양 대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사 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입주 지연 보상 금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분양권 전매
본 건축물은 비규제 지역 (원주시 혁신도시지구)에 위치하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 3 제2항에 의거 제1항 분양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사용승인 후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분양받는 자의 지위 또는 건축물을 전매 (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 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입니다 분양사업자와 분양받은 자가 동법 {제6조 제4항에 따른 분양계약 체결을 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용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을 어긴 경우 동법 제6조의 4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동법 제 10조 제2항 5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기 전매 요건은 향후 정부의 정책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V 기타 유의사항

■ 공통유의사항

- 분양 면적 표시 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 단위인 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평형 환산법 = 형별 면적 (m²)x0.3025 또는 형별 면적 (m²) /3.3058)
- 각종 광고 및 홍보물 (분양홍보관, 리플렛, 전단 공급 안내, 홈페이지, 신문 광고)등에 표시된 주변 개발 계획 및 각종 시설 (도로, 공공청사, 학교,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등) 조성 계획은 각 시행 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서 시행 주체 및 국가 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상담직원의 행위 및 각종 홍보물은 수분양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수분양자는 계약 체결 시 분양홍보관, 평면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수분양자는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여 현장 여건 및 주변 환경,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전자파, 전자기장애, 분진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을 하시기 바람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소유권 보존 등기 및 이전 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 공부 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일반과세자)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또한 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등을 분양 사업자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계약자는 입점 시까지 거주지, 연락처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내용을 (주민등록등본 포함) 당사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안내문 등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당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본 건물은 각 호실의 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형별 공급 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물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로 계획되어 있으며, 각 용도 시설은 별도 매각 시설로서 매각 주체와의 협의에 따라 해당 시설의 규모 및 디자인 계획의 변경 및 매각에 대하여 당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품질 관리를 위해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관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 품질, 품귀, 제조 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홍보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기 바람,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 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및 실행 중인 사항으로 상황을 표시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보존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필수 안내
 - 「외국인토지법」 제4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외국인토지법」 제9조에 따라 토지 취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인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함.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입주 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관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 부분의 시설물 (계단, 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 위치 등) 등은 최종 설계(변경) 도면의 내용에 준하며, 일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 (인테리어, 부동산 중개, 통신시설 가입 등)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바닥, 벽, 천장의 가구로 가려지는 비 노출 부분은 최종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본 건물의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개별 인테리어 공사는 입주 지정개시일 이후 잔금 완납 후 가능합니다.
- 입주 시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 계획 상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 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의 실제 시공 시 분양홍보관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사의 원활한 진행과 안전 사고 방지를 위하여 분양받은 자의 사용승인 전 건축물 방문은 정확한 일정을 지정하여 별도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에 의거 시행수탁자가 분양 대상 건축물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는 분양 계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받은 경우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9의2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제2항에 의거하여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공정증서로써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분양을 받을 자에게 주어야 하오니 분양홍보관 내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 설계유의사항

- 공통
 - 설계도서는 당사 분양홍보관 내에 비치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 건축물 계약 시 당사 분양홍보관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설계도서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분양자에게 있습니다.
 - 건축의 마감재료는 「건축법」 제52조 「동법 시행령」 61조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를 준수합니다.
 - 단위 호실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인수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제외 품목이나 기본 품목, 공간 분할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의 명칭, 외부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 과정에서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및 기타시설물 사용 시 인수 후 사용분에 대하여 공동관리비가 부과됩니다.
 - 쓰레기집하장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악취, 미관상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그 설치 형태와 규모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지상 1층 공개공지 공간에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은 추가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각 실 PS 및 코어부 PS 내부 배관에서 일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근린생활시설 호실간 경계벽은 건식 석고보드 벽체로 시공되어 벽체에 달아매는 액세서리 시공시 유의해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의 주차대수와 주차구획은 현장여건에 따라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일 줄눈 위치, 무늬 및 각 액세서리의 위치는 호실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상 1층 공개공지 등의 오픈 스페이스, 내외부인에 의한 소음 및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계실/전기실/헬륨/공조실/승강기기계실 등에 의하여 다소 소음 및 진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에 면한 단위 호실의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호실 내부마감자재의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 단위 호실 평면도의 이미지들은 인수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호실별로 각 실의 조망 및 방향이 상이할 수 있으니 청약 및 분양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분양홍보관에 설치된 외부조망사진 및 시뮬레이션 동영상 등은 연출용으로 실제의 조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호실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음 등)는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며 향후 소음, 호실간 벽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각 호실의 배치에 따라 인접건물 및 인접호실에 의해 조망과 일조량 등이 제한되고 사생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야간조명 효과, 차량 진 출입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시설물, 포장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비상차(소방, 이삿짐) 구획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DA, 급배기구, 조경시설물 등으로 인한 일조, 조망, 빛 반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부창호(개폐 및 환기창 포함)는 사용성 향상, 미관개선,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유리두께 및 창호사이즈, 프레임두께, 설치위치, 개폐방향, 분할크기, 색상, 하드웨어, 디자인 등 동질, 동급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자재 내용은 호실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분양홍보관을 참고바라며, 마감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 일부 호실은 공사시행 중에 샘플 호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설비에 대해서는 본 설비가 공사용으로 사전 이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민원 등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현장 시공여건에 따라 주요 구조부 내에 자재 반입 등을 위한 임시 개구부를 공사 기간 중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등 기타시설물 사용 시 인수 후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비용은 인수자가 부담하며 시설물계획은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실은 호실 내 소화 배관 등이 설치되어 일부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호실 외 공용부에 설치되는 전기, 통신 관련 시설물은 건축허가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건물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유면적(공용면적 제외)을 변경하지 아니 하는 내부 구조의 위치 및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굴도 후 지반 현황 또는 지내력시험 결과 및 건축법/소방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초구조 및 바닥 레벨, 평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주차장 램프 포함)와 근접하게 배치된 일부 호실은 소음(경보음 포함) 및 자동차 전조등, 보안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에 설치되는 경사면, 계단, 램프, 옹벽 등의 종류 및 위치, 노출 범위(높이/길이), 형태, 마감 사양, 디자인 등은 인접 도로 레벨과 현장의 실시 여건에 맞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라멘조 방식으로 건축되는 당 건물의 특성으로 근린생활시설 호실 내 기둥 및 보로 인한 내부입면 돌출이 있을 수 있으니, 수분양자가 계약 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1층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호실마다 층고가 상이할 수 있고, 건축물 내외부 바닥과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확인 의무는 수분양자에게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 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 및 식재 토심을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세부용도, 층별구성, 입면형태, 입점업종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일 이후 인수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향후 소방법 준수를 위한 소방설비 및 제연 시설물의 위치 및 개수 등의 설계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각 실별 소방법상 제연을 위한 닥트 및 급배기구 설치로 호실 간 소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차량 주행동선 개선을 위하여 각 시설 별 주차구획 및 경계선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의 안정공급을 위하여 도시가스배관 인입위치, 관경 등 세부사항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가스압력조정설비(지역정압기 포함)를 부지 내에 설치하며, 도시가스 인입위치 및 정압시설 위치 및 규격 등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준공 후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계약의 승계의무는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인수자에게 있습니다.
- 지하 1층, 지상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설계되어있으며 다양한 업종의 입점으로 인하여 소음, 환기, 냄새, 사생활 침해 및 방법등의 문제가 야기될수 있으므로 계약전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하여 일체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감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를 바로 잡고, 본 건물의 현장여건 및 기능/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계법규(건축법, 건분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매도인 겸 수탁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는 예외로합니다.

1.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설계변경의 경우 분양자는 수분양자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설계변경의 경우 분양자는 수분양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내부 천장고는 각 호실별 기계설비 장치(소화배관 등)의 설치에 따라 천장고의 높이 및 형태가 변경 될 수 있으며, 수분양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차는 설계상 620대로 계획되어 있으며, 그중 자주식 620대, 기계식 00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부지 내 시설 및 조경 등은 건축 한계선 공공공지 및 공개공지 내에 각종 시설물을 임의 설치 시 법에 저촉되어 철거될 수 있습니다.

- 설계 변경
 - 본 건물의 시공상 구조 및 성능 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계약자 동의가 불필요한 설계 변경 및 경미한 설계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 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분양 홍보물
 - 분양 홍보에 사용된 모형 (단지모형, 실모형 등)과 카달로그 및 각종 인쇄물, 기타 홍보물에 삽입된 CG (광역 위치도,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조경도, 단면도, 부대복리시설 및 호실 등) 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홍보관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와 관련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 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홍보 카달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도로 내 시설(횡단보도, 과속방지턱, 교통표시 등),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분양광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리플렛, 전단지, CG이미지컷, 현수막 등)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홍보관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호실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호실을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에 표현된 옥상 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코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 내 조경 및 수공간, 주민운동시설, 분양 홍보관 내 전시모형(건축물, 조경계획, 식재, 시설물, 포장계획, 부지의 고저차 등)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위치 및 개수 등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이버 홍보관의 VR동영상은 분양홍보관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홍보관 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분양홍보관을 계약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 시에 제시된 조감도 및 투시도, 모형 등에 표현된 식재표현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소방구조를 위한 에어매트 설치, 식재 여건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 홍보관
 - 분양홍보관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 및 표현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고 계약 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본 건축물 내 적용되는 모든 자재는 시공 시기, 생산 여건에 따라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 중단 제조 회사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급 또는 동급 이상 자재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관에 설치된 이동식 가구 및 페브릭, 가전, 악세서리 등 집기류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 분양홍보관에 설치되는 소방 감지기, 유도등, 비상 방송용 스피커, 스프링클러의 위치 및 수량은 분양홍보관을 위한 소방 설비로 본 공사와 무관하며 본 공사 시 소방법에 맞추어 시공됩니다.
 - 분양홍보관에 표시된 바닥 배수구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관에 설치된 온도 조절기 및 콘센트, 스위치, 조명기구, 환기 디퓨저 등 각종 기구의 제품 사양 및 위치,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 홍보관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달로그,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관에 시공되지 않은 호실에 대해서는 인허가 도서, 카달로그 및 각종 홍보자료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분양 상담을 통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평면, 마감재 및 단지 내 시설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홍보관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분양사업자 및 시공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 창호 및 부속 철물류, 가구(시스템 가구 포함) 및 가전류, 벽체 및 바닥재, 샤워부스, 발코니 난간대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분양홍보관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타일 및 석재 등의 나누기 및 줄눈 두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관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설계변경도서 포함)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 주체·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홍보관 내 건립 호실, 주민공동시설, 카달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모형의 조경, 석재, 시설물(DA,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 바닥마감패턴, 높이 및 마감, 주변 환경, 부지 고저차 및 단지레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호실 내·외부 창호와 문의 형태 및 위치는 분양홍보관 및 분양 안내 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본 공사 시 업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협력업체 계약 및 외부입면 계획에 따라 디자인, 프레임 사이즈, 유리 사양, 핸들, 외장재,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관 창호에 설치된 유리는 분양홍보관 설치를 위해 임의로 지정된 제조사에 의해 생산된 제품이며, 본 공사시 유리 제조사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관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감지기와 유도등 및 벽체에 설치된 경보기 등은 분양홍보관 자체의 소방시설로서 본 공사 시 위치와 사양 등이 변경되며, 분양홍보관에 설치된 에어컨 역시 분양홍보관 자체의 냉난방 설비로서 본 공사 시 적용되는 품목이 아닙니다.
- 분양홍보관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는 분양홍보관 운영을 위한 것이며 본 공사 시 소방법규에 적법하게 설치됩니다. 또한 실별 설치 위치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 당 설계 고지 내용은 본 건축물에 대한 고지로서 그 밖의 용도 시설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공용 면적 (계단실, 부대복리시설, 지하 주차장)은 실별 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 시 또는 지적 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으로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향후 본 건물의 설계 변경 (면적, 규모, 층수, 지하층, 용도, 주출입구 위치 등), 대수선, 리뉴얼 등이 관련 법률에 따라서 진행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도서와 실제 공사 간에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분양 후 관련 법률에 따라서 경미한 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의 구조 및 성능 개선 및 시공성 향상을 위하여 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내부 구조의 위치 변경 및 면적이 관련 법률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 내 명칭 및 실번호 표기 방법은 관계 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입주 시 본 광고의 표기 방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기타 설계상 주요 고지 사항의 설계 관련 주요 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사항

• 분양관리 신탁

- * 본 내용은 본 계약의 어느 조항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본 사업건축물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분양사업자(시행사) 뿌리깊은나무들(주)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받은 신한자산신탁(주)과 분양관리신탁계약,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한자산신탁(주)이 사업부지 신탁등기 및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며,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신한자산신탁(주)이 수분양자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하여 주는 경우에도 같음)
- 분양관리신탁계약,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에 근거하여 수탁자(신탁사) 신한자산신탁(주)은 현존하는 신탁재산, 분양관리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상 업무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공급계약서 및 관련 법규에 따라 공급계약에 의한 분양대금 반환, 입주지연 등에 따른 제반 의무는 분양사업자(시행사)인 뿌리깊은나무들 주식회사, 건축물의 하자보수 의무는 시공사인 주식회사 태왕이앤씨가 부담합니다.
- 매수인은 분양사업자(시행사)인 뿌리깊은나무들(주)가 본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분양사업자가 시공사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와 관련하여 매수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한자산신탁(주)은 본 사업 관련 부족한 사업비 조달에 대해 관여하지 않습니다.
- 본 사업 분양대금은 본 광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한자산신탁(주) 명의의 분양대금 수납계좌에 납부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분양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매수인은 분양사업자(시행사)인 뿌리깊은나무들(주)에게 납부한 분양대금 총액(분양대금채권 등)을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2항에 의거 신한자산신탁(주)에게 양도함을 인지하며, 수분양자는 이를 승낙합니다. 단, 분양대금 반환사유 발생 시 반환책임은 매도인인 뿌리깊은나무들(주)에게 있으며, 분양대금 반환과 관련하여 신한자산신탁(주)은 현존하는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 반환 업무에 협조합니다.

- 신탁계약이 종료 내지 해지되는 경우, 또는 분양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 중 선행하는 시점에 신한자산신탁(주)의 본 공급계약에 따른 일체의 권리, 의무는 본 공급계약의 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뿌리깊은나무들(주)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됩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합니다.
- 수분양자는 분양개시 후 위 분양관리신탁이 차입형태지신탁으로 전환될 경우 분양사업자가 신한자산신탁(주) 등 신탁회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하며, 원분양계약에서 분양사업자를 변경하는 분양계약을 다시 체결하는데 동의하고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시공사의 모든 책임 및 의무는 분양사업자(차입형태지신탁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신탁회사)와 시공사 간 체결하는 공사도급(승계)계약에 따라 실제 공사(시공)행위를 시작한 때 부터 발생한다.
- 수분양자는 분양개시 후 시공사가 신용등급이 더 높은 시공사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표시사항

- 등록업체 : 신한자산신탁(주)
- 부동산개발업등록번호 : 서울 080061 (사업방식 : 분양관리신탁)
- 소유권에 관한사항 : 대지 소유권 100% (소유권이전 형태 : 잔금완납 시 개별등기)
- 원주시청 신속허가과 [2020-신속허가과-신축허가-16](2020-4190304-1101-16) 2024. 05. 31. 건축허가 완료

■ 사업관계자 표시

구 분	회사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신탁사 (분양대금 관리자)	신한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120 - 87 - 07104
시 행 사	뿌리깊은나무들(주)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C동 1103-9호(문정동, 문정역 SKV1)	220 - 87 - 98832
시 공 사	(주)태왕이앤씨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403 (남일동) 6층, 7층, 8층, 9층	504 - 81 - 89073
설 계 사	(주)푸름종합건축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22길 30-10, 2층(논현동)	221 - 88 - 68215
감 리 자	건축사무소건축마당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로 17번길 5, 806호	314 - 04 - 96285

■ 분양홍보관(분양사무실)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서원대로 442, 더테라스 by 레드우즈파크 홍보관

■ 분양 홈페이지 : 더테라스레드우즈파크.kr

■ 분양문의 : 1551-8584

- ※ 본 광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잘못이 있을 수 있으니 분양홍보관 및 분양사업자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 오류가 있는 경우,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 자세한 공사 범위 및 마감재는 분양홍보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본 광고와 분양계약서상 내용이 상이할 경우, 분양계약서를 우선 적용합니다.

